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69
----------	------

발의연월일 : 2016. 11. 3.

발의자 : 박남춘 · 인재근 · 서영교
김정우 · 윤관석 · 이재정
홍영표 · 손혜원 · 강병원
전해철 · 이찬열 · 김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둘째로, 2009년부터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단체상해공제사업 특성상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003년 본 법 제정 당시 공제사업 수행을 전제로 45명 이던 직원 정원이 공제사업의 확대 외에 옥외광고사업, 지방재정발전 지원사업 등 사업다각화에 따라 2016년 현재 직원 정원이 105명으로 기관이 성장하여, 신규사업인 회계통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다양하고 전문적 사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직급 격상이 필요하고, 다각화된 사업영역에 대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 증원이 요구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를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u>공제제도</u>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공제</u> <u>제도 확립·운영 등</u> ----- ----- ----- -----.</p>
<p><u>제11조(임원의 정수)</u>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으로 할 수 있다.</p>	<p><u>제11조(임원의 정수)</u>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p>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5. (생략) <u><신설></u></p>	<p>제16조(사업)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u>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u><신 설></u></p> <p>제22조(「민법」의 준용) (생략)</p>	<p><u>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u>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p> <p>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p> <p>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p> <p><u>②</u>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p> <p>제23조(「민법」의 준용) (현행 제22조와 같음)</p>
--	--